

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수석전문위원 연병호

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이 조례안은 2012년 6월 4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6월 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제안이유

- 별정직 임용시험 실시기관 및 시험절차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, 임용시 공고생략 대상범위 확대로 별정직의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한편,
-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인력충원제도 개선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 등을 개선·보완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임용시험 실시기관 및 임용절차 명시(안 제5조)
 - ▶ 임용절차 등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준용근거 마련
- 별정직 임용시 공고생략 대상범위 확대(안 제5조)
 - ▶ 별정직 직무분야가 동일하나 다른 별정직 직위(상당계급)로 재임용
 - ▶ 직제 및 정원 변경(전보 사유)으로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

- 임용시험의 공동시행 및 위탁근거 마련(안 제5조의2)
 - ▶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필요시 상호간 또는 민간 기관과 공동시행 및 위탁제도 마련

- 장애인 차별 조항 삭제(안 제10조)
 - ▶ 직권면직사유 중 정산·신체상의 사유를 삭제

- 질병휴직 등의 허용과 인력충원제도 개선(안 제11조)
 - ▶ 질병·소재불명·간병휴직 허용과 함께 별도정원 인정
 - ▶ 출산휴가 연계 육아휴직시 출산휴가시부터 후임자 보충 가능

4. 검토의견

금번 개정조례안은 별정직 임용시험 실시기관 및 시험절차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, 임용시 공고생략 대상범위 확대로 별정직의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한편,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인력충원제도 개선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 등을 개선·보완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임 : 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
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